

# 절편녹용 대책안

본회는 최근 농림부·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만나 절편녹용 수입허용은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국내 양륙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대책안을 제시했다. 무조건 반대만 하다 사슴수입 개방때와 같은 충격적인 전철을 방지 않기 위해 마련한 대안인 것이다. 양륙농가의 여론 수렴을 위해 대책안을 소개한다(편집자)

우리나라 녹용 수입량의 65%를 수출하는 뉴질랜드는 수년전부터 자국산 품질보장이란 명분과 국내 규격품 유통을 이유로 자국산 절편녹용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당국은 국내 규격 및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정부당국과 양륙위원회는 WTO제소 검토 등의 강압적인 요구뿐 아니라 최근 APEC 한·뉴정상회담에서 절편녹용 수입을 요구하는 등 녹용수출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당국은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의 영향 검토 및 대책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뉴질랜드 절편녹용이 수입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양륙업과 양륙인이다.

현 전지녹용 수입제도에서도 한·뉴 녹용의 격심한 가격차 때문에 국산녹용 판매난으로 10%의 사슴을 살축하는 상황인데 절편녹용이 수입되면 한·뉴 녹용 가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국내 양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회는 우리 양륙기반 보전과 5만 양륙가족 생업보호를 위해 다음의 절편녹용 대책안을 제시하오니 정부당국은 대책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 지원 대책 수립후 절편녹용 허용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 □ 경쟁력 확보 및 품질 차별화 대책

국내 양륙기반을 보전하려면 경쟁력을 확보하여 경쟁국과 대등한 사육형태와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현 집약사육 구조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림내 방사 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비싼 외산 조사료(갈잎 70%, 알팔파 30%) 대신 버려지는 국산 조사료(수엽류)를 자급할 수 있도록 유향 국공유림에 사슴방사를 허용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자연산 약초 섭취로 품질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륙 정책지원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 ○ 산림내 사슴 방사 허용

산림 훼손을 고려하여 엘크♂ 마리당 1만평, 꽃사슴♂ 마리당 2천평 기준으로 대단위는 엘크 100마리, 중단위는 엘크 50마리, 소단위는 꽃사슴 50마리로 구분 방사할 때 대단위(100만평)는 도단위로 1개소, 중단위는 시·군단위로 1개소, 소단위는 읍·면단위로 1개소, 합계 1,593개 시설에 약 8만마리♂ 사슴을 방사토록 함(현♂ 사슴수의 90%방사). 단, 산림내에서 사슴 방사를 하도록 관계법령 및 산림임차 규정을 개정하고 사슴 입식은 연차적으로 확대해야 함.

## ◇ 방사내역

구 분	산 립 이 용 내 역				사 슴 방 사 내 역			
	단위면적	설치지역	설치수	연 면 적	방사품종	성별	방사수	년두수
대단위	100만평	도단위	8	800만평	엘 크	♂	100	800
중단위	50만평	시·군단위	165	8,250만평	엘 크	♂	50	8,250
소단위	10만평	읍·면단위	1,420	14,200만평	꽃사슴	♂	50	71,000
계			1,593	23,250만평(77,500ha)				80,050

### 1. 생산비 절감 67%

사육자 1인이 엘크 25마리를 집약사육할 때 생산비용은 인건비 45만원/두, 조사료 60만원/두, 농후사료 18만원/두, 관리비 40만원/두, 합계 166만원/두이나, 사육자 1인이 엘크 100마리를 산림내 방사시 생산비용은 인건비 12만원/두, 조사료(3개월) 15만원/두, 농후사료 18만원/두, 관리비 10만원, 합계 55만원/두로 67%절감됨.

(단위 : kg/천원)

구 분	조사료	배합사료	인건비	관리비	계
집약사육	$5 \times 365 \times 3.3 = 600$	$2 \times 365 \times 2.5 = 180$	$12,000 \div 25 = 400$	$1,600 \times 25 = 4,000$	1,660
방 사	$5 \times 90 \times 3.3 = 150$	$2 \times 365 \times 2.5 = 180$	$12,000 \div 100 = 120$	$1,000 \div 100 = 100$	550

### 2. 자연산으로 품질 차별화

협소하고 오염된 사육장에서 외산 건초로 사육하는 현 사육구조 보다 산림내 방사시는 광활한 산림내에서 신선하고 다양한 수엽류와 야생 약초를 섭취한 자연산(준야생) 녹용을 생산, 소비자의 인식전환뿐 아니라 외산 방목 녹용과의 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음.

### 3. 소득대비

집약사육시 엘크 성록 두당 생녹용 생산량 10kg을 양당 8천원에 판매할 때 비용 166만원을 제외한 두당 소득액은 46.8만원으로 양당 생산가격은 6,240원이나, 산림내 방목시 녹용생산량은 2kg 감소한 8kg일때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두당 소득액은 115만원이므로 양당 생산비는 약 2,600원으로 집약사육과 산림내 방사 소득 차는 2.5배임.

#### ◇ 생녹용 소득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생용 생산량	조 수 입	비 용	순수익
집약사육	10kg	$8 \times 26.6 \times 10$ 2,128	1,660	468
산림내방사	8kg	$8 \times 26.6 \times 8$ 1,702	550	1,152
		$5 \times 26.6 \times 8$ 1,064		514

#### ◇ 녹용(양당) 경쟁력 대비

구 분	국산(A)	외산(B)	AB대비
현 행 전지녹용	8,000	3,000	A+2.6배
대책후 절편녹용	5,000	4,000	A+0.25배

\*외산은 kg당 수입가 47\$×환율 1,150÷26.6냥×세금50%

#### 4. 효과

생산비 67%를 절감하여 외산과의 가격차 해소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차별화로 국산녹용 소비확대를 통해 양육기반을 보전할 수 있음.

#### ○ 재정지원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은 산림내 사슴목책(휼스) 시설비와 녹용가공시설 및 수매자금 등으로 구분함.

#### 1. 사슴목책(휼스) 시설

방사지역 주위 및 수용시설 설치비용은 대단위 1억원, 중단위 6천만원, 소단위 2천800만원이 소요되며 비용의 70%를 정부에서 지원.

단, 방사계획서 제출자에 한해 지원하되 5년간 분할 지원 계획수립.

구 분	단위당 비용(만원)			소요예산(만원)		예산조달(만원)	
	휼스길이	단 가	금 액	설치수	금 액	자부담	정부지원
대단위	10,000	1	10,000	8	80,000	24,000	56,000
중단위	6,000	1	6,000	165	990,000	297,000	693,000
소단위	2,800	1	2,800	1,420	3,970,000	1,191,000	2,779,000
계				1,593	5,040,000	1,512,000	3,528,000

#### 2. 녹용보관 및 가공시설

녹용은 매년 5월중순부터 7월하순까지 일시에 채취함에 따라 생녹용 보관 및 가공시설이 필수적이나 60%가 넘는 영세사육 농가의 녹용보관시설 미비 또는 부실 관리로 인한 품질 손상방지 및 가공에 필요한 냉동시설, 절편가공 시설을 중앙 및 도단위 설치비의 국고지원.

설치장소	시설면적	용 량	설치수	금 액	소요예산액	비 고
도단위	7평	1,200kg	8	8,000만원	11,000만원	냉동고, 절단기, 포장기
중앙단위	16평	5,000kg	1	3,000만원		

#### 3. 녹용수매자금

수매물	수매량	소요예산	지 원 방 법	기 간	비 고
생녹용	12,000kg	255,360만원	무담보 또는 수매물 담보	1년	

소규모 농가는 생산물을 직매하나 전업규모 농가의 판매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량의 수매가 불가피함에 따라 생산자 단체에 녹용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가격하락을 막아야 함.

## □ 녹용수급대책

### ○ 내외산 균형수급 제도화

가공한 건녹용은 한약재, 천연상태의 생녹용은 축산물로 규정하여 외산은 한약재, 국산은 축산물로 유통하나 소비자는 다같이 보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녹용 수급처인 한의약업소에서 생녹용도 한약으로 조제하면 한약재인데 건녹용 규격품만 한약재로 규정하고 있어 국산 생녹용은 한약재 사용이 금지되고, 외산 건녹용만 사용하도록한 현행 법령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량의 20%에 미달하는 국산은 소비 제한으로 판매난이 가중되는 반면 외산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할 뿐 아니라 제약원료용 생녹용 수입량이 국산 생산량의 66%인 8만kg으로 폭증하여 생·건시장을 석권한 상황에서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하면 국내 양록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내외산 녹용의 균형수급을 위해 한의약업소에서 생녹용을 병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관련법령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28조(규격품기준) 및 제34조(규격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한 준수사항)

### ○ 녹용규격 현실화

1. 생약규격집에 수재된 녹용명칭을 녹용으로 단일화하고 녹용의 정의중 “매화묵, 마록 및 동속근 연동물”을 “꽃사슴, 붉은사슴, 큰사슴의 수사슴”으로, “골질화되지 않은 어린뿔”은 “골화 덜된 뿔”로 현실화.
2. 성상의 수치를 삭제하고 회분함량이 포함된 생·건녹용의 지표물질 기준 설정.
3. 녹용은 품종별로 상·중·하 부위별과 혼합으로 규격화하고 품질은 성분기준에의한 등급 규정.

### ○ 부정유통근절

1. 해외 여행자 귀국시 0.5kg의 녹용을 휴대할 수 있음에 따라 검증 안된 수만kg의 외산 저질녹용이 시중에 부정유통되는 상황에서 절편녹용 개방시 가짜(순록) 녹용 범람으로 여행자의 피해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여행객 휴대허용을 폐지할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제정.
2. 권력과 결탁된 전문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밀수녹용의 본국 반송과 압수녹용의 소각처리, 그리고 밀수자의 형벌을 체벌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령의 개정.

### ○ 품질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

수입녹용의 검사제도는 현행 의약품수출입협회의 관능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식의약청에서 검사를 전담하되 현 “선통관 후검사” 제도를 “선검사 후통관”으로 전환해야 저질 불량품 수입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